

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 출 : 2008. 2. 22(사천시장)
- 나. 회 부 : 2008. 2. 22(총무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22호)
- 다. 상 정 : 2008. 2. 29(제12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담당관 김영고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여비규정」 개정(대통령령 제20402호, 2007.11.30)에 따른 「사천시 공무원여비 조례」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낱말 띄어쓰기와 법령명을 맞게 개정함(안 제2조제1항, 제2조의2, 제3조 제2항, 제4조)
- 여비등급기준 간소화에 따라 시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정함(안 제3조)
 -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 → 별표 1 제1호라목
- 여비정산을 위한 “정부구매카드”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“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”로 보는 규정을 정함(안 제4조제1호)
-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정에 맞게 개정함(안 제4조제2호, 6호, 7호)

다. 관계법령

- 공무원 여비규정(대통령령 제20402호 2007.11.30개정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 조례안은 2007.11.30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.

○ 개정내용으로

- 현행 규정의 낱말 띄어쓰기와 법령명을 정비하고, 여비등급기준 간소화에 따라 시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정하고
- 여비 결재와 정산시 정부구매카드사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실정에 맞게 수정·보완하는 것임

○ 검토의견으로

-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등을 검토한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